



승인번호
제 920024 호

연구자료 CRM 2022-26



2021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졸업 후 상황 조사 매뉴얼

(나)타입



III. 조사 항목별 지침 안내

1. 취업자
2. 진학자
3. 입대자
4. 제외인정자
5. 취업불가능자
6. 기타
7. 미상

III

조사 항목별 지침 안내

1. 취업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외취업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아래의 취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별 사전 자체점검 요청’ 시 해당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KEDI에서 검토 후 취업구분 변경 처리)

- 취업 제외 기준

구 분	유의사항
대학의 재정지원 관련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재정*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에 지원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학교 입주기업, 방과 후 학교 사업 등) * 대학의 재정: 교비 및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지원금 등 대학의 모든 회계를 포함※ 단, 대학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취업한 경우 증빙자료 검토 후에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인정함
건강보험 직장가입 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

◦ 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외취업자)로 연계되었으나 학교 자체조사 결과 교내취업자인 경우 취업구분을 ‘교내취업자’로 변경하여 입력

증빙자료

◦ 대학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모두 제출

증빙자료	확인 사항
사업계획 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시행된 계획 및 공문
선정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준일(2021.12.31.) 이전 실시한 사업에 선정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공문
사업 참여 학생 및 기업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20.8월, ‘21.2월 졸업자)이 참여한 정보만 제출함

KEDI

◦ 교내취업 여부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적합 여부 등 연계자료 검토

검증사항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FAQ

Q1.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연계되었으나, 학교조사 결과 취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여 다른 취업구분(기타, 진학자 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나요?

→ 4월 조사기간에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를 교내취업자 외 취업구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월 중 교육부로부터 「대학별 사전 자체점검」 요청 공문이 오면, 해당 명단을 KEDI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KEDI에서 확인 후 취업구분을 변경합니다.

Q2. 입학당시 기취업자가 무엇인가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입학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동시에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자를 의미합니다. 입학당시 기취업자는 12월 최종결과 공표 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경로 및 방법

- 홈페이지 > [졸업 후 상황] > [결과조회] 메뉴에서 졸업자 개인별 최종 취업구분 확인
- ① 입학당시 취업여부가 '예'이며, ② 최종 취업구분이 '취업자(건보가입자), 교내취업자, 교내취업자 TLO'에 해당하는 졸업자를 확인

Q3. 건강보험직장가입자(교외취업자)로 인정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이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학생과 기업의 일자리 매칭 실시 및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교내취업자 TLO'도 비슷한 경우이나,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경우 교내에서 근무 및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연계 사유별 처리방법

학교 자체조사에서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자로 조사되었으나, 해당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미연계된 경우 사유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졸업자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 상세내용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DB연계되지 않는 것이 정상임
해당자는 추후 '22.8월 보건복지부 연계를 통해 제외인정자로 분류될 것이며, '22.12월 최종 결과 공표 시 의료급여수급자 인정여부 확인 가능
- 확인서류 : 없음
- 처리방법 : 학교 별도 조치 불필요(건강보험직장가입자 인정불가)

②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상세내용 :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DB연계되지 않는 것이 정상임
- 확인서류 : 건강보험 특설확인서(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지 확인)
- 처리방법 : 학교 별도 조치 불필요(건강보험직장가입자 인정불가)

③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늦게 신고한 경우

- 상세내용 : 취업통계조사의 건강보험 DB연계는 사업장에서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근거하여 실시하므로 KEDI 자료 연계 ('22.2월~3월) 이후 소급 신청하여도 취업자로 인정 불가함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 신고일]이 입사(자격취득일) 후 14일 이내인지 확인)
* 회사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이후 발급 가능한 서류
- 처리방법 : 학교 별도 조치 불필요(건강보험직장가입자 인정불가)

④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정상 신고했으나, 지역건강보험공단 업무 처리가 늦어진 경우

- 상세내용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상의 [자격취득 신고일]을 검토하여 입사 이후 14일 이내 정상 신고함이 확인된 경우, 취업자로 인정함
- 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 신고일]이 입사(자격취득일) 후 14일 이내인지 확인)
* 회사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이후 발급 가능한 서류
- 처리방법 : KEDI 담당자에게 연락 후에 증빙자료 제출하여 검토 요청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연계된 경우에 KEDI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최저임금: '21년 1,822,480원, '22년 1,914,440원

변동사항

- 인정기준 미달자의 경우, 타 취업구분으로 변경 입력 가능
 - 교내취업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타 취업구분(진학자, 기타 등)으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변경한 취업구분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 또는 구비(73p 참고)해야 함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취업구분		
		'22.4월		'22.12월
		연계	제출	최종
학교 자체조사결과 교내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조사 시 교내취업자로 조사되었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외취업자)'로 연계된 경우 '교내취업자'로 입력해야 함 	건보가입 취업자 (교외)	교내 취업자	교내 취업자
계약만료 이전 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는 동일하게 제출하고, 사직서 및 후임자 채용기안은 구비해야 함 - 추후 KEDI 검증 시(5월~11월)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업률 증가를 위한 단기 채용이거나 자의적 사직임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교내 취업자	교내 취업자	교내 취업자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등에 취업한 자는 반드시 '교내취업자'로 입력해야 함 	교내취업자 또는 건보가입취업자 (교외)	교내 취업자	교내 취업자
인정기준 미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취업자'로 연계되었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 처리방법: 타 취업구분(진학자, 기타 등)으로 변경하여 제출 	교내 취업자	타 취업구분	타 취업구분
대학 동재단 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부속병원, 부속/병설학교, 부속유치원, 부속어린이집 등 대학 동재단에 취업한 자는 교내취업자로 변경하지 않음 ※ 단, KEDI 검증 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지가 교내이거나 단기 취업의 경우 교내취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함 	건보가입 취업자 (교외)	건보가입 취업자 (교외)	건보가입 취업자 (교외)

◦ 정의된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1년 이상의 계약기간, ②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 수령

-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월 급여는 지침 상 최저임금('21년 1,822,480원, '22년 1,914,440원)을 충족해야 함
 - ※ 교직 등의 사유로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도 예외 없음
- 교내취업자로 연계되었으나 학교 자체조사 결과 교외취업자인 경우 KEDI담당자에게 연락
- 최초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나, 연장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인정함
(단, 기존-연장 계약기간 사이 하루라도 공백이 있을 시 인정 불가)
- 교내취업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고용계약 관련 서류 **제출**, 급여 및 계약종료일 이전 사직자 관련 서류 **구비**
- 증빙자료 상 근무기간 1년 이상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구분	증빙자료	세부 내용		
제출	고용계약 관련	'22.4월 기준	1년 이상 1년 미만	-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
구비	급여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중 택 1 ※ 각 연도별(2021년, 2022년) 증빙자료 필요		
	계약종료일 이전 사직자 관련	사직서 및 후임자 채용기안		

**KEDI
검증사항**

- 월 급여는 건강보험DB 연계자료를 통해 검증하며, 급여 미달자에 한하여 '22.7월 소명자료 요청 예정(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구분	확인 사항
고용계약 관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확인
급여 관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수령 사실을 확인 ('21년 1,822,480원, '22년 1,914,440원)
계약종료일 이전 사직자 관련	-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가 자의적 의사로 사직 했음을 확인 - 취업률 증가를 위한 채용이 아님을 확인

[참고사항] 교내취업자 급여기준 산출 공식

- 2021년도 급여기준: $1,822,480원 = 8,720원(\text{최저임금}) \times 209\text{시간}^1)$
- 2022년도 급여기준: $1,914,440원 = 9,160원(\text{최저임금}) \times 209\text{시간}^1)$
- 1) 소정근로시간: $[(40\text{시간}^2) + 8\text{시간}^3)] / 7\text{일} \times (365\text{일} / 12\text{월}) = 209\text{시간}$
-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함
- 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휴게시간 8시간을 적용함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FAQ
Q1. 교내취업자 인정비율(%)에 제한이 있나요?

→ 취업통계조사 시 교내취업자 인정비율(%)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평가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해당 평가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시간강사도 교내취업자인가요?

→ 시간강사의 경우, 비상근 근로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교내취업자로 인정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실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급여액은 지침 상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Q3. 교내취업자의 계약종료일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계약종료일을 ‘20991231’로 입력하면 됩니다.

Q4. 교내취업자 최저임금을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도 지급할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은 근무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에 계약한 경우, 2022년 1월 급여부터는 2022년 최저임금인 1,914,4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교내취업자 급여 증빙자료는 2022년 자료도 필요한가요?

→ 급여는 ‘계약기간(1년)’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소명기간 또는 현장점검을 위한 대학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시점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 시작일 ~ 제출 시점까지 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확인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 제출시점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점(또는 퇴사일) 이전 1년간 월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비과세소득 지급명세서는 추가로 제출 가능)

Q6. 우리 학교는 정규직 임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면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교내취업자는 어떤 증빙자료로 대체해야 하나요?

→ 임용 관련 공문을 제출해주시고 증빙자료 오른쪽 상단에 정규직임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7. 교내취업자로 연계된 졸업생 중 교내취업자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교 자체조사로 확인된 타 취업구분으로 변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진학자로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없으나 진학자DB(국내 진학자) 및 법무부 출입국기록(국외 진학자) 확인 후, ‘진학자DB 미연계자(특수대학원 등)’와 ‘출입국기록이 부적합한 국외진학자’에 한하여 ‘22.7월 소명자료 요청 예정

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TLO

정의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변동사항 ‘청년 TLO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 사업인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연계 사업 변경

구분	기준	변경
인정 사업명	청년 TLO 사업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유의사항 ◦ 없음

증빙자료 ◦ 교내취업자 TLO 연계자의 경우 증빙자료 없음
◦ 교내취업자 TLO에 해당되나 ‘교내취업자’로 연계된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모두 제출
- 계약 체결(선정) 공문 또는 사업 계약서
- 해당 취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연계 청년기술인력 육성사업 참여 학생 명단
※ 사업기간은 조사기준일(2021.12.31.) 이전에 실시되어 조사기준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취업자도 조사기준일 당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KEDI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라. 해외취업자

정의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고용계약(혹은 계약종료일 포함) 상태여야 함
◦ 해외취업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DB연계 해외취업자의 경우 증빙자료 없음
◦ 미연계 해외취업자의 경우 아래의 2가지 증빙자료 모두 제출

비자사본	-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고 조사기준일 당시 유효해야 함
고용계약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서 형태의 서류 -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또는 근로 시작일과 자료 발급일) 및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 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영문으로 번역된 서류 추가 제출 *검증사항과 관련 없는 개인 민감정보(급여, 직급 등)는 삭제 후 제출 *계약일시, 주당 근무시간 등 주요 검증사항에 형광펜 표시 후 제출

◦ 소명·정정 기간('22.7월)에 해외취업자로 변경할 경우, 법무부DB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KEDI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 법무부DB 연계자료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검증하며, 출입국 기록이 부적합할 경우 '22.7월 소명자료 요청 예정(출입국사실확인서 필요)

 **FAQ**
Q1.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

- ①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https://swiss.kedi.re.kr>) > 알림소식 > 자료실
- ②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worldjob.or.kr/abGuide/visaInfo.do>)

Q2. 해외에서 창업을 한 경우 어떤 증빙자료로 대체해야 하나요?

- 사업신고서와 비자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신고서에는 사업개시일이 조사기준일(2021.12.31.)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신고서와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비자는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Q3.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계 해외취업자의 계약종료일,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이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과 다릅니다.

- 계약종료일(20991231), 근무형태(1), 주당 근무시간(15)은 일괄 기본값으로 연계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Q4.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여 고용계약 관련 서류에 계약종료일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계약종료일을 ‘20991231’로 입력하고, 증빙자료에는 계약기간을 대체할만한 계약 내용(예: full time, 정규직 등)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5. 국내 위치한 외국계기업 취업자는 해외취업자 인가요?

- 아니요. 국내 취업자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연계될 것입니다.

Q6. 해외 위치한 한국계기업 취업자는 해외취업자 인가요?

- 네. 해외 위치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해외취업자로 봅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농림어업종사자

정의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변동사항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어업인 포함)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 연계를 통해 검증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구분	기준	변경
증빙자료	대상자 전체: 증빙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어업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그 외 대상자(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연계 결과, 농·어업 종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명 기간('22.7월)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임업, 축산업 종사자 등은 DB연계가 불가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자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연계에 따라 '22년 조사부터는 증빙자료 중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은 인정하지 않음
 ◦ 농림어업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어업인 포함)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연계를 통해 검증)
 ◦ **그 외 대상자(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포함)**는 아래의 증빙자료 중 택 1, 제출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 소명·정정 기간('22.7월)에 농·어업종사자로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KEDI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DB 연계자료를 통해 농·어업 종사 여부를 검증하며, 농·어업 종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2.7월 소명자료 요청 예정

 FAQ

Q1. 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림어업종사자인가요?

→ 네. 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림어업종사자입니다.

Q2. 후계농어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인데 입대자로 연계되었습니다. 농림어업종사자로 변경해도 되나요?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3.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온라인 조회 방법

-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 [농림사업도우미] > [정보열람] >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하러가기' 클릭
- ② 이름+주민번호, 이름+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여부 확인

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21.12.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항목	인정 조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공연활동에 참여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소: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2) 횟수: 1편 이상 <p>※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p>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전시활동에 참여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소: 등록미술관,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2) 횟수: 1편 이상 <p>※ 출품자 및 스태프 포함</p> 				
출판 및 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 및 출반활동에 참여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오프라인</td><td style="padding: 5px;"> 1) 출판 및 출반사: 사업등록 3년 이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2) 초판: 500부 이상 </td></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온라인</td><td style="padding: 5px;"> 1) 출판 및 출반사: E-book 발간 전문업체 2)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td></tr> </table> 	오프라인	1) 출판 및 출반사: 사업등록 3년 이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2) 초판: 500부 이상	온라인	1) 출판 및 출반사: E-book 발간 전문업체 2)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오프라인	1) 출판 및 출반사: 사업등록 3년 이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2) 초판: 500부 이상				
온라인	1) 출판 및 출반사: E-book 발간 전문업체 2)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영상제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 작성에 참여한 자 - 오프라인 상영·개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 자 				

변동사항

◦5% 심의대상 선정기준 강화('23년 조사부터 적용)

- 학과 5% 초과 인원이 동일 작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5%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 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한 학과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된 날짜로 진행한 비슷한 개인창작활동을 각각 다른 개인창작활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개인창작활동을 여러 학과 졸업자가 학과별 5% 이내로 나누어 참여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심의위원회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활동 인정 여부를 정성 평가하는 심의조직으로써, 심의위원 및 세부 심의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심의 대상 선정 기준
 - ① 한 학과 졸업자의 5% 초과 인원이 동일한 작품·공연 등에 참여한 경우
 - 5% 초과 시, 참여 인원 모두 심의 대상자로 선정됨
 - 5% 초과 인원은 소수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출함(주야간 구분)
 - 예: 미술학과(일반과정_주간) 48명 × 0.05 = 2.4명 → 3명(올림)
 - ⇒ ‘올림’기준 3명을 초과한 4명 이상의 졸업자가 동일 창작활동에 참여한 경우,
 -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
 - ② 스태프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
 - ③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 ④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인정 불가함(부록 참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 가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은 계약서이어야 함
 - 단체 계약 시에도 각 개인의 서명 필수
 - * 계약서 양식: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졸업을 위한 작품·공연(졸업작품전 관련) 및 재학 중 과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스태프의 정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장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 의거함(부록 참고)
 - 허위 개인창작활동 및 증빙자료의 위변조 의심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허위 취업으로 자진신고를 원할 경우 5월 중 ‘대학별 사전 자체점검 요청(교육부)’ 시 공문으로 제출하며, KEDI에서 ‘기타’로 일괄 처리함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와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항목에 따라 아래의 증빙자료 모두 제출

항목	증빙자료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자 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자 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항목	증빙자료				
출판 및 출반	<table border="1"> <tr> <td>오프라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출반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 및 출반사와의 계약서 - 인쇄 및 출반 증명서 -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 </td></tr> <tr> <td>온라인</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ook 및 출반물 발간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 </td></tr> </table>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출반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 및 출반사와의 계약서 - 인쇄 및 출반 증명서 -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ook 및 출반물 발간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출반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 및 출반사와의 계약서 - 인쇄 및 출반 증명서 -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ook 및 출반물 발간업체 사업자등록증 -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 -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 				

| 영상제작물 |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선택) 작품 참여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엔딩크레딧 캡처화면 등)* * 필수 제출은 아니나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참여여부 검증 시 활용되므로, 미제출 시 추후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 - 신탁기관¹⁾과의 신탁체결서 -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 캡처화면 등) - (선택) 곡 또는 앨범 발매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²⁾ -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 2)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21.12.31.)까지의 기간 내 발매 및 활동 확인을 위함. 필수 제출은 아니나 심의위원회에서 앨범 발매일에 대한 문의가 많으므로, 미제출 시 추후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KEDI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5% 초과 등 심의 대상 여부 검토

[참고사항] 동일 창작활동의 기준

항목	기준
공연	공연명 기준으로 같은 일시에 행해진 공연(개인 역할 기준이 아님)
전시	전시명 기준으로 같은 일시에 행해진 전시(개인 작품 기준이 아님)
출판 및 출반	인쇄본 1권 및 음반 1매 기준
영상제작물	영상제작물 1편 기준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1편 기준

[참고사항] 증빙자료 미흡 주요사례

등록증	업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항목과 관련 없는 경우
계약서	본인 서명의 부재, 계약서 구성 및 형식 미흡한 경우
확인서	확인 주체 측의 직인 또는 서명의 부재한 경우
팸플릿	본인의 작품 및 역할 확인 불가한 경우

 FAQ
Q1. [지침] 예술계열 관련 학과의 졸업자만 인정되나요?

→ 졸업자의 학과와 관련 없이 제출된 증빙자료(실적)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증빙자료_등록증]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등록증만 인정되나요?

→ 네. 해당 증빙자료는 '장소' 검증을 위함으로, 공연장 혹은 전시장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연 및 전시 기획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장소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Q3. [증빙자료_확인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되나요?

→ 주최기관(단체)에서 공연 또는 전시장과 계약하여 학생 개인별로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주최기관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연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

2) 졸업자가 해당 공연 또는 전시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주최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Q4. [증빙자료_계약서] 단체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서 상 학생 본인 서명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 '20년부터 개인창작활동증사자 실적 인정은 본인 의사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하므로, 계약서의 본인 날인과 주요 계약 내용('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준하여 작성) 등이 누락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Q5. [기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수익이 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없습니다. 영상제작물로 인정되나요?

→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유튜브 등 온라인 컨텐츠 제작 활동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인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 프리랜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Q6. [기타] 개인창작활동 실적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 대표 실적만 입력하고, 증빙자료는 모든 실적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심의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대표 실적 외 작품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7. [기타]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 인정이 될까요?

→ 오프라인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시로 인해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 1인 창(사)업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조사방법	기준
국세청 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2021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515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학생창업기업의 월 평균 매출액(873,040원) × 학생 창업활동기간(5.9개월)
중소벤처기업부 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 <p>※ 단, 사업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함</p>

변동사항 ◦ 기 인정사업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DB연계 사업 변경

구분	기준	변경
인정 사업명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 단, 사업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조사방법	내용
국세청 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조사 시 1인 창(사)업자로 파악된 자는 '기타'로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 DB연계('22.10월) 후 최종결과 공표('22.12월) 시 확인 가능 - 취업구분이 '전학자', '기타' 혹은 '미상'으로 입력된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계함 - 미연계된 경우 추후 취업구분 변경 불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월 조사 시 확인 가능

◦ 1인 대표가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음

증빙자료

◦ 없음

KEDI

◦ 없음

검증사항

[참고사항] 1인 창(사)업자 인정 금액 기준

• 1인 창(사)업자 인정금액: 515만원 ≈ 873,040원¹⁾ × 5.9개월²⁾

1) 873,040원: 학생창업기업의 월 평균 매출액

- 산출근거: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액 약 10.5백만원 ÷ 12개월

(2020년 대학 신학협력활동 조사결과 창업부문 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20년 기준))

2) 5.9개월: 12개월 - 6.1개월(학생 창업준비기간)

- 산출근거: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18년 기준)

※ 1인 창(사)업자 기준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KEDI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임

아. 프리랜서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조사방법	기준
국세청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원천징수 사업소득액이 총 5,467,440원* 이상인 자 * 8,720원('21년 최저임금) × 209시간 × 3개월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학교조사 시 프리랜서로 파악된 자는 '기타'로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DB연계('22.10월) 후 최종결과 공표('22.12월) 시 확인 가능
 - 취업구분이 '진학자', '기타' 혹은 '미상'으로 입력된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계함
 - 미연계된 경우 추후 취업구분 변경 불가능함

증빙자료 ◦ 없음

KEDI ◦ 없음

검증사항

[참고사항] 프리랜서 인정 금액 기준

• 프리랜서 인정금액: 5,467,440원 = 8,720원¹⁾ × 209시간²⁾ × 3개월

1)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

2)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7일] × (365일/12월)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프리랜서 기준은 전문가협의(교육부, 세무관련 종사자, KEDI)를 통해 정해진 기준임

FAQ

Q1. 프리랜서 연계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진학자

가. 국내 진학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KEDI는 학교에 구비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기타’로 일괄 처리함
◦ 미연계된 동대학(원) 진학자(예시: 특수대학원 진학자)도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증빙자료 ◦ 신입생정보 조사 결과 연계된 진학자는 증빙자료 없음
◦ 미연계 진학자의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중 택 1, **구비**

- 재학증명서 / 재적증명서 / 휴학증명서 / 학교 간 진학자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

※ 반드시 조사기준일(2021.12.31.) 이후 발급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사기준일 당시 재적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증빙자료에는 입학일 또는 재학 중인 학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KEDI ◦ 없음

검증사항

FAQ

Q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인데 입대자로 연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은 진학자입니다. 진학자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진학자 증빙자료 구비

Q2.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학교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 KIST와 협정대학의 학교명 및 학교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Q3. 증빙자료 발급 유효일을 알려주세요.

→ 진학자는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재적(재학, 휴학) 상태가 확인 가능한 자료만 유효함.
반드시 조사기준일(2021.12.31.) 이후 발급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Q4. 동대학원 진학자이나 연계 시 누락되었습니다.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재적 상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제적일 경우 진학자로 인정되지 않음).
더불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은 신입생정보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에서 직접 조사해주세요.

[참고사항] 진학자 상세 인정 기준

- 학위과정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인정’, 비학위과정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로 ‘불인정’

◦ 진학자 인정 사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으로 진학한 자
- 아래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근거법령	학교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폴리텍대학 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평생교육법	ICT폴리텍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영남사이버대학, 세계사이버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을 통해 국내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한 자

◦ 진학자 불인정 사례

- 국외 전문대학대학원의 입학허가를 받은 후 학위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 코스에 진학한 자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 예정자
- 해외 어학연수자
-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예: 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에 등록한 자
-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로 진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과정으로 진학한 자

나. 국외 진학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2022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 예정자는 ‘국외진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 KEDI는 학교에 구비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출입국 기록이 부적합한 경우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아래의 증빙자료 중 택 1, **구비**

- 재학증명서 / 재적증명서 / 휴학증명서
 - ※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해당 국가 언어 자료 제출 가능)
 - ※ 반드시 조사기준일(2021.12.31.) 이후 발급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사기준일 당시 재적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명·정정 기간(22.7월)에 국외진학자로 변경할 경우, 법무부DB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KEDI ◦ 법무부DB 연계자료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검증하며, 출입국 기록이 부적합한 경우 ‘22.7월
검증사항 ◦ 소명자료 요청 예정(출입국사실확인서 필요)

FAQ

Q1. 국내에 있는 국외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국외진학자가 맞나요?

- 국내에 있는 국외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국외진학자로 인정됩니다(예: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이 때, 국가명은 ‘대한민국’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출입국 기록 확인 시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3. 입대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군 입대자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입대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 병무청DB연계 입대자의 경우 증빙자료 없음

◦ 미연계 입대자의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중 택 1, 제출

입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확인 공문 / 현역 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등 ※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입교일' 또는 '입대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입대자로 인정하지 않음
임관 전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 확인 공문 / 부사관 입영통지서 / 현역 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등 ※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입교일' 혹은 '입대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입대자로 인정하지 않음 ※ 군 관련학과 졸업자 중 임관 전 훈련생은 훈련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KEDI ◦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FAQ

Q1. 조사기준일 당시 학사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한 경우 입대자인가요?

→ 임관 후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므로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Q2. 군복무 대신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입대자인가요?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취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연계될 시 취업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조사기준일 당시 승선대기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은 '입대자'로 분류됩니다.

Q3. '입대자' 항목은 남자만 입력이 가능한가요?

→ 네. 여자의 경우, '제외인정자(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목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Q4. 입대하였으나 조사기준일 이전 전역 또는 입대 취소 등의 경우, 입대자로 인정되나요?

→ 입대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제외인정자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구 분	정 의
의료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여자군인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훈련생 신분인 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생인 자 <p>*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4조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p>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제외 인정된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경찰 채용후보자 교육기관에서 교육 훈련생인 자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소방 채용후보자 교육기관에서 교육 훈련생인 자
WFK사업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체류자 중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인정하는 KOICA 봉사단(일반, 국제개발전문, 프로젝트), NGO 봉사단 참여자 <p>* KOICA 경력사다리 1단계에 포함되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봉사단에 한정</p>

변동사항

◦ 없음

유의사항

- 학교조사 시 의료급여수급자로 파악된 자는 ‘기타’로 입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DB연계 ('22.8월) 후 최종결과 공표('22.12월) 시 확인 가능
 - 취업구분이 ‘기타’ 혹은 ‘미상’으로 입력된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계함
-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로 인정된 학과 졸업자도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하여 입력해야 하며, 최종결과 공표('22.12월) 시 ‘진학자’ 및 ‘입대자’를 제외한 자는 일괄 제외인정자로 분류됨
- 경찰/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은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훈련 중인 상태이어야 인정 가능하며, 합격 후 발령 대기상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제외인정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구 분	증빙자료 종류
	의료급여수급자	- 없음 (보건복지부 DB연계 결과 일괄 적용)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 군복무 확인 공문이나 부사관 입영통지서 또는 현역복무 확인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 교육훈련생 신분 확인서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 없음(KEDI 심의 결과 일괄 적용)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중앙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교육원 재학증명서(졸업증서)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청, 경북, 강원) 재학증명서(졸업증서)
	WFK사업 참여자	- 없음(외교부 DB연계 결과 일괄 적용)

KEDI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
검증사항

FAQ

Q1. 의료급여수급자이지만 실제로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인정되나요?

→ 아니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는 모두 제외인정자로 분류되나요?

→ 아니요. 진학자와 입대자는 해당 취업구분으로 인정되며, 그 외 졸업자는 제외인정자로 분류됩니다.

5. 취업불가능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u>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 중인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해외이민자: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이주신고를 통한 이민출국자 및 현지이주자 -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자
변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및 장애인은 취업불가능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명·정정 기간('22.7월)에 해외이민자로 변경할 경우, 법무부DB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취업불가능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과정에서 필요 시 증빙자료 요청 ◦ 사망자의 경우 증빙자료 없음(건강보험 DB연계 결과 일괄 적용)
K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전수 검증
검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이민자는 법무부 DB연계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검증하며, 출입국 기록이 부적합할 경우 '22.7월 소명자료 요청 예정(출입국사실확인서 필요)

[참고사항] 고령자, 장애인이 취업불가능자에 해당되지 않는 법적 근거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p>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6. 기타

-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변동사항** ◦ 없음
- 유의사항** ◦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취업불가능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기타’로 일괄 처리함
- 증빙자료** ◦ 없음
- KEDI** ◦ 없음
검증사항

7. 미상

- 정의** ◦ 조사기준일(2021.12.31.)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 변동사항** ◦ 없음
- 유의사항** ◦ 미상이 5% 이상이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락이 불가한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미상’으로 선택하나, 일괄 미상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증빙자료** ◦ 없음
- KEDI** ◦ 학교별·학과별 외국인유학생 미상률(%) 검증
검증사항

[참고사항] 외국인 유학생이란?

: 외국 국적을 가진 졸업자로, 4월 조사 시에는 국내 졸업자와 동일하게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단, 최종결과 공표('22.12월) 및 공시 연계 시 ‘외국인 유학생’으로 별도 분류되어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